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안내

1.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학회에서는 소속 회원, 기관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내 용: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기관 요건 변경**

- (변경 전)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·평가를 완료하여, 질병관리청으로부터 **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홈페이지에 목록이 공고된** 의료기관

※ 기본 요건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'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'에 해당

- (변경 후) 기본 요건 충족 시 **별도 지정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**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여부 결정

※ **코로나19 PCR 검사 숙련도평가(연 1회 이상) 참여 권고**

○ **적용일시: '23.3.1.부터**

※ 3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'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' 지정 목록 삭제

2. 아울러 정기 숙련도 평가 참여 등 검사기관의 자율적인 검사 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(사)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, 보건복지부장관(보험급여과장), 보건복지부장관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)

보건연구사 **이현정** 보건연구관 **박재선** 진단총괄팀장 **김갑정** 전결 2023. 2. 13.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2490 (2023. 2. 13.) 접수

우 - / <http://www.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844 팩스번호 / hyunje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